



연금보험의 비교세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

강성호 연구위원

최근 정부는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준비를 이유로 장기 저축성보험(연금보험)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할 바 있음. 이 중 월적립식(월납 150만 원 한도) 연금보험에 대한 과세가 금액(합산보험료)에 의해서라기 보다 원인계약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 또한 이는 추가납입제도(추납)의 활성화 한계 및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 등으로 연금보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. 이에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(150만 원)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금액기준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- 2017년 정부는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준비¹⁾를 이유로, 장기 저축성보험(연금보험)의 비교세 납입 한도를 일시납에 대해 축소하고 월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신규로 적용함
 -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(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)의 개정으로 '17년 4월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연금보험에 대해 일시납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, 월납보험료는 한도가 없었다가 150만 원까지만 비교세 혜택²⁾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
- 연금보험의 월납보험료에 대한 비교세 기준을 금액(합산보험료)에 의해서라기 보다 원인계약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³⁾

1)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16. 12. 28), “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”;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17. 1. 31), “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” 참조

2) 비교세 혜택은 이자소득세 15.4%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함

3) 정원석(2016), 「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」, 포커스, KiRi리포트, 보험연구원

- 원인계약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연금보험 계약 체결로 합산보험료가 월납한도(150만 원)를 초과하게 될 때 한도 초과를 유발한 계약으로 정의함
- 현행 월적립식¹⁾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 15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 초과 시 해당 계약의 전체 납입금에 대해 과세함(표 1) 참조²⁾
 - 예를 들어, 월 50만 원(계약A)과 월 100만 원(계약B)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계약자가 이후 ‘계약A’에 추가로 10만 원을 납입할 경우 ‘계약A’는 월 60만 원의 상품이 되며, 원인계약인 ‘계약A’의 전체 금액(월 60만 원)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됨
 - 위와 동일한 계약 상황에서 반대의 경우(‘계약B’에 추납금 10만 원을 납입)에는 원인계약인 ‘계약B’의 전체 금액(월 110만 원)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됨
 - 이는 가입자 기준에서 전체 납입보험료가 동일하더라도 과세대상 금액(전자는 60만 원, 후자는 110만 원)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

〈표 1〉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초과에 따른 과세형평성 분석 사례

구분 \ 계약형태	계약A(원인계약)+계약B	계약A+계약B(원인계약)
비과세 한도 내 (원인계약 없음)	-월납 150만 원 비과세: 월 50만 원(계약A) + 월 100만 원(계약B)	
추가납입보험료(추납)	-원인계약이 계약A인 경우: 계약A에 추납 10만 원	-원인계약이 계약B인 경우: 계약B에 추납 10만 원
과세 및 비과세 금액	-월 합산보험료: 160만 원 -과세대상 월납액: 60만 원 (계약A+추납) -비과세대상 월납액: 100만 원 (계약B)	-월 합산보험료: 160만 원 -과세대상 월납액: 110만 원 (계약B+추납) -비과세대상 월납액: 50만 원 (계약A)

- 한편, 개정 전에는 연금보험에 대한 월납한도가 없어 금액기준이든 원인계약 기준이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었음

■ 또한 원인계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추가납입제도(추납)의 활성화 한계 및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 등 연금보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

- 최근 금감원 등은 보험료 추납 활용 시 수익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,³⁾ 원인 계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금보험에 대한 추납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.

1)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3항 2호에 의하면,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의 조건은 납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매월 균등보험료를 납입하되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하고, 기본 및 추가납입 월보험료의 합산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함
 2) 생명보험협회(2017), 저축성보험차익 비과세 세법개정 주요내용, ‘2017월간생명보험5’ 참조
 3) 금감원 보도자료(2016. 8. 24), “금융꿀팁 200선 - ③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”

- 일반적으로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체결비용(모집수수료 등)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낮게 적용되어(보험료 2%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)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함
- 또한 추가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보유 상품에 대한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추가 가입 및 납부가 줄어들 수 있음
- 기 가입한 계좌가 1개 이상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최소 2개 이상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- 예를 들어, 월납 70만 원 계좌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월납 100만 원의 여유자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80만 원과 20만 원 계좌로 분리하여 두 건으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

■ 연금저축 등에서는 원인계약 기준이 아닌 금액(합산보험료)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

- 연금저축의 경우 합산보험료(연금저축+퇴직연금본인부담) 기준으로 최대 연간 700만 원에 대해 13.2%의 세액공제를 적용함
- 이 경우 몇 개의 연금저축계좌(신탁, 보험, 펀드, IRP)가 있더라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연금보험과 같은 과세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
- 예를 들어, 연간 납부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 납부로 7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700만 원 초과분만 세액공제되지 않으므로 계약 형태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

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(150만 원)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금액기준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

- 동일 수준의 합산보험료에 대해 과세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, 나이가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로 인한 가입유인 약화 등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임 **kiri**